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10
- 나. 제안자: 채우진 의원 외 6인
- 다. 제안일자: 2024년 2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화)

## 2. 개정사유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 나. 입법예고: 2024. 2. 13. ~ 2. 19.(제출된 의견 없음)

##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채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 제2항의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였음.
-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율참여기구이며, 위원으로 위촉되면 임기 2년 동안 4개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 청년문제와 관련된 의제 발굴·제안 ▶ 마포구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지역 청년 교류 활성화 ▶ 청년정책과 관련한 구정활동 및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됨.
- 현재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총 15명(남성 8명/여성 7명)이며, 이 가운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분과장 4명, 부분과장 4명으로 운영된 현실을 고려하면, 부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표 1]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마청넷)' 분과별 구성 현황

분과 명칭	인원(명)	활동 내용
일자리	7	마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탐색 및 진로 탐색을 지원
살자리	3	마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교육, 안전 복지 등의 생활 불안정 요소를 탐색 및 해소
펼칠자리	4	마포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문화 및 예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다음자리	1	현재와 미래의 청년을 위해 성평등, 환경, 공유경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탐색 및 정책 제시

- 또한, “마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운영결과에 따라 부위원장 구성 인원의 조정을 제안한 사실을 감안하면,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이 1명인 구는 강서구이고, 부위원장 규정이 없는 구도 강남구, 광진구 등 12개 구로 조사됨.

**[표 2] 서울시 자치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 구성' 현황**

(2024. 1. 1. 기준)

구 분	자치구 명
남·여 부위원장 각 1명 ( 12개 구)	마포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위원장 1명 (1개 구)	강서구
부위원장 미규정 (12개 구)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